알바 노동자의 권리, 휴게시간과 근무조건

알바노동자 필수상식④

김재섭 알바노조 경희대 분회 분회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알바노동자 섭섭 씨는 카페 알바다.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한다. 이곳의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손님이 없을 때 휴식할 수 있고(단 손님이 오면 일해야 한다), 카운터에는 의자가 없다. 그리고 유니폼이 지급된다. 흔히 볼 수 있는 근무조건이다. 이 근무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휴게시간'이다. 아쉽게도 현행법상에서는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총 9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섭섭 씨에게는 따로 규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없다. 손님이 없을 경우 손님이 들어올 때 까지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섭섭 씨에게는 근로시간 동안 약 1시간 가량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동안은 낮잠을 자도 되고, 피시방에 갔다 와도 되고, 핸드폰 게임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라는 말은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린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물론, 업종과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의 일률적인 부여가 어려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편의점 알바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업무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면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편의점 사례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편의점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점주가 잠깐 나와서 일을 하든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섭섭 씨에게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카운터에 의자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의자를 카운터에 설치해야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임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다. 근로기준법의 제 4조, 5조에서는 근로조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정한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법 상에서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하도록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주어져 있다.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상에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8시간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섭섭 씨의 입장에서는 카운터에 의자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있다.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염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당당히 사장님과 싸우기는 어렵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이다. 심각한 경우 알바 노동자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관리자의 폭언을 당하기도 한다. 12시간을 서서 일하는 사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사람, 진상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 등 다양한 근무조건을 겪고 있는 알바 노동자가 있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용자(사장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서 건강하게, 일해보자.

참여마당

윤장한
(경영학과 2009)

복지 확충 위한 재원 마련 사회적 기업이 유력한 대안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60대 노모와 30대의 두 딸이 자살했다. 소위 '세 모녀 사건'이라 불리는 일이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이 존재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늘어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마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은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내지만, 그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환경보호,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관한 관심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증폭돼왔고 민간 부문에서 노력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재원마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하나의 방법은 '사회적 기업' 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지역 문화, 레저, 레크리에이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효과를 내고 있는 유럽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그 효과가 미미하며 규모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6만 8,000개나 존재하는데 반해서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1,16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체계가 없다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앞서 말했듯 유럽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민간 부문의 노력으로 먼저 이루어졌기에 민간 투자의 비중이 상당하고 그 자생력 또한 높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 증권거래소'라는 사회적 기업만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가 있어 자본을 제공받기도 용이하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기 때문에 재정 구조에 있어 정부지원금이 20%나 되며 정부 의존도도 높다.

사회적 기업은 이미 그 효과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입증이 되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고령화, 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게 적절한 자금지원체계가 마련되고, 대중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리 잡아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1면에서 이어짐

선한 사람이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인류의 자연적 감정이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정의로우며 인간애가 많다면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그를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그가 거짓되고 불의하며 무자비하다면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그를 '악한 사람'으로 여겨 불신과 경멸과 분노를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차원의 자연은 별개로 작용한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인류의 자연적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에 순응하는 유능한 강자를 보상하고 거스르는 무능한 약자를 처벌함으로써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진실, 정의, 인간애를 발휘하는 선한 사람이 신뢰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거짓, 불의, 무자비를 저지르는 악한 사람이 불신, 경멸, 분노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은 영리하고 부지런한 악인(惡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善人)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동감에 바탕을 둔 도덕적 행위는 보다 풍요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1759)에서 동감(sympathy)을 중심으로 인류의 자연적 감정을 분석하면서 도덕의 일반 원칙(공평무사한 관망자의 관점)을 제시하였고, 《국부론》(1776)에서 부를 창출하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을 분석하면서 정치-경제학 원리를 제시하였다. 동감에 바탕을 둔 도덕적 행위는 보다 풍요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스미스는 단순히 '정치-경제학'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도덕-정치-경제학'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물의 자연적 진행이 더 영리하고 더 부지런한 악인을 덜 영리하고 덜 부지런한 선인보다 우위에 서게 만듦으로써 인류의 자연적 감정에 충격을 주는 많은 결과들을 산출할 경우 인류의 자연적 감정은 이에 개입하여 교정하려고 한다." '교정'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스미스에게 인간사회의 중력은 이기심이 아니고 동감이다.

[서울C]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국가장학 1차"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4.11.20.(목)~12.8(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2014.12.1.(월)~12.31(수)
1.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
· 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3. 장학 선발자가 2015–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교내장학금』 신청	
	1. 2015–1학기 우수장학, 우정장학, 모범장학, 밝은사회장학 등 특정목적을 제외한 모든 장학 신청을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으로 통합함. 2. 장학금신청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서류 제출 장소 (해당자에 한함)	구 분	해당자 및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부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학생지원처 장학팀	–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부 – 경희가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기존 계속장학생(입시, 보훈, 경희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기간에 신속히 신청요망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절차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납입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참고사항	1. 2015–1학기부터 우정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지급함. 2. 장학생 선발기준(우수,모범,밝은사회단대)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3. 교내·외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수혜 불가 (이중수혜시 환수 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 인정) 4.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5. 계속장학생이 2015–1학기에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외의 타 장학수혜가 없을 경우에는 2015–1학기 등록을 하지않고 휴학 요망(미등필휴학).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